

중질유 분해 · 탈황사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 건의

국내석유수요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환경규제 정책(저유황 연료유 공급의무화)등의 영향으로, '95년 현재 경질유 비중은 64.0%, 저유황유 비중은 81.7%로 급격히 경질화·저유황화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할 경우 유종별로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인 관계로 유종별 생산비율과 소비비율의 차이로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같은 수급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국내 잉여제품인 중질유 및 고유황유는 수출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수입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석유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투자사업입니다.

이에따라 통상산업에서는 국내석유수요의 고급화 추세에 맞춰 저유황·경질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등 석유정제 고도화 시설의 확충을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폐업계도 1995년말까지 219천B/D의 시설을 완공하였고 향후 210천B/D의 시설을 추가 건설할 계획으

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 사업은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에 관건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비(상암중류시설의 7.6배에 해당하는 112억원/천BPSD)와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통상산업에서도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 25조 내지 제 26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중질유 분해 및 탈황사업이 반영되었고, 관세법 부칙 제 7조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에 중질유분해업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 규제법 제 25조 내지 제 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3조 내지 제 14조에 의거한 중질유 분해 및 탈황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9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부칙 제 7조에 의거한 첨단기술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은 '9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감면율도 1996년 25%에서, 1997년에는 20%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계가 추진중인 중질유 분해 및 탈황사업계획이 1999년에 일단락되더라도 국내환경기준 강화와 석유수급구조 변화추세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소요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동사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조치는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중질유 분해·탈황사업의 계속추진 필요성과 막대한 투자비소요에 따른 폐업계의 자금부담을 감안하시고, 자유화·개방화를 목전에 둔 우리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제 25조 내지 제 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3조 내지 제 14조와 관세법 부칙 제 7조가 별첨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정부의 세제개편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생략〉[끝]